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23일(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4월 27일(토)

4. 폐지근거

「지방자치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 제39조

5. 검토의견

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2012.12.31 조례 제899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으로 본 조례를 존속시켜 운영할 필요가 없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 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